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합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

방 동 희*

요약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합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 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합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합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합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화법제도

A Study on Legislative Implication and Legislation Principles of Achiev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

Bang, Donghee

Abstrac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clared the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in a timely manner from its inauguration. The NIS is a new program which innovates old-fashioned Infomatization policy of the past administration. NIS aims to upgrade Information-society(NIS defines its goal as 'The Creative and Trustful Knowledge-Information-society')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Legislative Implication and the Legislation Principles for fulfill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by deducting legislative way concerning concrete plan for NIS.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IT Legislative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eywords : Lee Myung-bak administration,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national infomatization masterplan,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matization, IT law

I. 서론

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정부는 ‘선진화’와 ‘실용’의 키워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¹⁾ 곧이어 같은 월 29일 이명박정부의 ‘키워드’를 반영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고, 여러 부처를 이합집산시키는 정부조직의 기능재편이 단행되었다.²⁾ 특히,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소위 ‘국가정보화’적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보화에 관한 강력한 추진적 ‘드라이브’를 약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물론, 이명박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철학은 실제영역과 유리된 별도의 추진체계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별 부분에 ‘흡습(Embedded)’되어 각 영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구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각 현업부처로 분산시킨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 재편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³⁾ 즉,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관전 포인트가 ‘추진체계 등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즉 개별 ‘콘텐츠’로 이동했음을 의미하고 소위 ‘드라이브’ 자체를 약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게 했던 것은 다음 아닌 2008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선포였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고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지식 창출 및 활용체계 혁신을 위한 ‘창의적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적합한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성숙된 ‘신뢰의 정보사회’, 국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첨단 ICT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윤택하게 생활하는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구체적인 국가정보화 목표로 제시하였다.⁵⁾ 또한 상기 적시한 5대 국가정보화 목표별로 구체적 아젠다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적시하였다.⁶⁾

결국,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이명박정부의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정비전 실현을 위하여 ‘분산보다는 융합’, ‘촉진보다는 활용’으로 이제까지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개선방향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명박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조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법제 개선 방향에 있어서 ‘합의’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이 될 만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정보화 법제 개선의 패러다임을 예측함은 물론, 입법

1)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니다.’로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선진화’, ‘실용’의 단어가 유독 많이 사용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명박정부를 ‘실용정부’라 칭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취임사는 청와대 (2008), ‘대통령 취임사(2008. 2. 25)’,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6 (검색일 : 2010. 01. 21).

2) 개정 정부조직법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모토로 하여 ‘2월 15부 2차 3실 5위원회’의 정부조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http://www.law.go.kr/LSW/lsc.do?menuId=0&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iBgcolor1> (검색일 : 2010. 1. 21).

3) 구 정보통신부의 ‘국가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 산업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콘텐츠 정책’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등 개별 영역으로 업무를 분산시켰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오강탁 (2008),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42 : 107-139.

4) ‘창의’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와 비ICT 부문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신뢰’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p.2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09), 『국가정보화기본계획』, <http://www.pendis.go.kr/> (검색일 : 2010. 02. 21)

5) 국가정보화 목표로 제시한 5가지 사항은 ‘창의적 소프트웨어’,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를 2대 엔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를 선진화시켜야 할 3대 분야로 구조화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p.29.

6) 정보화추진위원회는 IT분야 메가트렌드, 국정과제, 각 부처 정보화계획을 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 SI업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영역 및 수요 등을 조사하여 5대 분야에서 20개 아젠다 72개 정보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p.158 이하 참조.

의 주요방향을 설정하는데 조력함이 본 글의 궁극적 목적이다.

2. 논의의 방법론 및 전개 순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논의의 소재가 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의 대계’로서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기본 골조에 해당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밑그림 - 법률에서는 통상 ‘시행계획’이라 칭한다 - 은 상술한 기본 골조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단계에서 수립되게 된다.⁷⁾ 여기서, 본 논문의 주요관심은 기본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정비의 큰 방향 -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밑그림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수준이 아닌 - 이다. 그러나 대개 법제정비 방안 내지 대안의 도출은 모든 세부 도면이 완성된 이후에 각각 적용되는 개별규정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소위 ‘저인망 방식’으로 진행됨이 통상적이다. 저인망 방식은 문제되는 핵심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법제정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는 우수하나, 전체의 형상 내지 거시적 체계를 간과하게 되어 - 본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법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즉, 거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 다른 영역의 고려가 부족하여 타 영역과의 마찰 또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기 마련한 대안이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본 논문이 다루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법제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 소위 ‘시행계획’ 수준의 - 구체적 대안을 찾기 이전에 국가정보화 법제의 거시적 체계를 조망하고 관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큰 그림에 대한 법제정비의 거시적 방향을 파악하고, - 따라서 세부적 법제 정비방안인 법령의 구체적 개정안이 도출되기 보다는 법제도 개선의 거시적 방향이 분석되게 된다 - 이를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법제 개선에 있어서 ‘함의’를 찾고, 더 나아가 법제정비의 일반원칙적 요소⁸⁾를 기술하는 순서로 전개한다.

II.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

1. 법제개선의 의의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에 있어서 법제도의 역할은 정보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하고,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 또는 제거함에 있다. 즉 순기능에 대한 조력과 역기능에 대한 대처로써, 정보화에 있어서 법제도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⁹⁾에 있어서 법제도는 지대하게 큰 공을 세운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법제도는 국가 정보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추진근거를 제공하였고, 정부주도의 정보화 발전 및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영역별 정보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며 동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의 ‘일반적 방향’이라는 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표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일반 원칙’으로 표현하였다. 즉, 이 의미는 정보화 법제 개선에 있어서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일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논문 제명에서와 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개선의 ‘일반적 고려사항’ 정도를 의미한다함이 타당하다.

9) 정보통신발전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는 ITU가 국가별 정보통신 발전수준과 격차를 측정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수로서, 2009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4개국 중 2위로 평가되었다. 기타 스웨덴(1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아이슬란드(5위) 등이 우수 국가로 선정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2009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p.3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지원하며, 정보통신의 접근기반을 확보하게 하는 등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함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없는 법적기반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로 국가정보화를 세계에서 최고수준에 오르게 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공공·민간에서의 IT기반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는 강력한 촉진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사회의 지식재산권 확립 및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은 지속되었다.¹⁰⁾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칭한다)’을 원활하게 실현함에 있어서도 ‘유관 법제도의 개선’은 소위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결과제에 해당한다.¹¹⁾ 이제,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의 각 분야별 아젠다와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사של한 바와 같이 5대분야 20개아젠다로 편성되어 있다.¹²⁾

이명박정부의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거시적 법제개선 방향은 다음 <표 1>의 20개 아젠다가 제시하는 목표를 소재로 관련 법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핌으로써 파악한다.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는 일은 그 자체로서 법제정비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필수 선결사항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기본계획’상 법제개선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거시적 법제개선의 방향을 논하기로 한다.¹³⁾ 기본계획과 논의전개상 일치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5대분야 순으로 기술한다.

2. 창의적 소프트 파워

‘창의적 소프트 파워’란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소프트파워 기반의 창조적 성장을 도모함을 의미하고,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개방·참여·협업·세계화를 통한 창의적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는 의미이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30). 이명박정부는 사회변화의 엔진으로 ‘창의적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개방-공유-협업 기반’ 마련, (2) ‘국가 총체적 지식의 극대화를 위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된 선순환 구조’ 확립, (3) ‘지식인프라’ 구축, (4) ‘창의적 두뇌’ 양성 및 (5) ‘소프트 파워 친화적 생태계’ 조성의 5가지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법제도 개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1)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개방-공유-협업 기반’ 마련, (2) ‘국가 총체적 지식의 극대화를 위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된 선순환 구조’ 확립 및 (3) ‘지식인프라’ 구축이다.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개방-공유-협업 기반 마련, 국가 총체적 지식의 극대화를 위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된 선순환 구조 확립과 지식인프라 구축을

10)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 (2007),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2(2): 173-197.

11) 참여정부시대 국가정보화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전자정부 31대로드맵 과제’에 있어서도 ‘전자정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가 하나의 단위 과제로 포함되어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p.230 이하 참조.

12)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제서(각주 4) 참조; 이에 대하여 간명하게 요약한 자료는 오정연 (2009),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서울행정학회 등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p.645 이하 참조.

13) 효과적이고 간명한 논의진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제시된 20개 아젠다 중 기술개발, 정책고도화 또는 문화향상 등을 통해서 기주어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 보다 ‘법제개선’이 아젠다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표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분야별 아젠다¹⁴⁾

분야	아젠다
창의적 소프트 파워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개방-공유-협업 기반 마련
	국가 총체적 지식의 극대화를 위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된 선순환 구조 확립
	지식인프라 구축
	창의적 두뇌 양성
	소프트파워 친화적 생태계조성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국가 네트워크 융합 인프라 선진화
	융합 촉진형 기술 개발 및 제도개혁
	지식기반 신SOC 조성
신뢰의 정보사회	건강한 사이버 세상 구현
	장애인/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걱정없는 일상생활 보장
	선제적 재난 및 위기 대응체계 실현
일 잘하는 지식정부	성과를 창출하는 지능형 행정체계 확립
	국민에게 편리한 생활공감 서비스 창출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민주행정 실현
	지속가능한 정보화 발전 기반 강화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그린 ICT 및 협업상행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첨단 u-ICT기반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융합형·개방형 산업 기업정보화
	선진 지식정보화를 위한 ICT 산업기반 강화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이 개발되고 공유되며 협업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선결됨이 필요하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40). 즉, 정보, 업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및 인력 등의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이 공유되고 협업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⁵⁾ 사실, 이를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정보기술아키텍처(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이다.¹⁶⁾ 그러나, 우리나라는 ITA를 도입·적용함에 있어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기술아

14)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5대 분야 20개 아젠다 72개 과제의 상세한 제목은 정보화추진위원회(2008), p.159 이하 참조.

15)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과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의 개념은 미국 정보기술관리혁신법(ITMRA: The Clinger-Cohen Act of 1996)에 의거한 개념으로 동 법은 정보자원을 정보,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 장치, 예산, 정보기술로 정의하며, 정보자원관리는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각 규정.

44 U.S.C. 3502(6): the term 'information resources' means information and related resources, such as personnel, equipment, fun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44 U.S.C. 3502(7): the term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means the process of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to accomplish agency missions and to improve agency performance, including through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burdens on the public.

16)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는 정부기관의 임무와 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통합구조라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규정 The Clinger-Cohen Act of 1996(Public Law 104-106) Section 5125 (d):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DEFINED- In this section, the term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with respect to an executive agency, mean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evolving or maintaining exist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acquiring new information technology to achieve the agency's strategic goals an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goals.

키택처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¹⁷⁾으로 ‘기술’ 중심의 개념으로 협소하게 파악함으로써 원제도(源制度)의 취지를 그대로 발현하지 못했다. 결국 정보자원관리는 국가정보화기본법,¹⁸⁾ 전자정부법,¹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²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¹⁾ 등으로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²²⁾ 따라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지식정보자원’,²³⁾ 동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정보자원’,²⁴⁾ 전자정부법 제2조 제11호의 ‘정보자원’,²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기록물’²⁶⁾ 등의 ‘정보자원 (Information Resource)’의 유관 개념이 비체계적으로 분산됨으

로써 정책의 중복과 이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²⁷⁾ 이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정보자원의 개방·공유·협업이 가능하게 하기 ‘정보자원관리(IRM)’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분산된 ‘정보자원’에 대한 법적개념의 재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정보, 업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및 인력’ 등을 포괄하는 ‘정보자원’의 개념을 정립함이 필요하다.²⁸⁾ ‘정보자원’의 법적개념이 확립된 이후에,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명주기 - 즉 ‘예산, 기획, 발주, 개발, 감리, 평가, 운영, 개선, 성과관리, 인센티브’ - 에 따른 관리운영의 통일적 법제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정보자원의 생명주기별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간 체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²⁹⁾

- 17)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법률 제9209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 제2호. 이 규정은 현재 전자정부법[시행 2010. 5. 5][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제2조 제12호에 동일하게 이관되었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흡수·통합되면서 해당 규정의 이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 18)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가정보화의 추진,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연차 보고 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9) 전자정부법[시행 2010. 5. 5][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 2. 4][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기록물의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 등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29][법률 제8871호, 2008. 2.29, 타법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의 절차,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2)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기반의 전자정부사업관리시스템 도입, IT투자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정보자원의 품질 고도화 및 서비스중심 체계, 정보자원통합관리체계 안정화 및 확산을 통해 고도화된 정보자원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신영진 (2006),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자치행정」2006(11): 90-95.
- 23)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09. 8.23][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 제3조(정의) 제7호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24)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09. 8.23][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2항 제4호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통활용방안의 수립,
- 25) 전자정부법[시행 2010. 5. 5][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제2조(정의) 제11호 「정보자원」이란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서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 2. 4][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제2호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27) 미국법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들의 상호 중복 및 상충을 지적하고 체계적 연계성의 부족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김성근·안남규·이진실 (2005),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체계 분석 : 미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7(1): 21-40, p29 참조.
- 28) 정보자원을 information+resource로 정의한다면, 정보자원관리법은 정보의 수집·생산·이용·공개·제공·기록관리·폐기 등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기준·절차의 체계화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기반 조성 등 일체의 정보자원관리활동을 모두 규율하는 법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호 (2008), 「전자정부에서 지식관리(KM) 및 정보자원관리(IRM)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0: 225-245, p.242 참조.
- 29) 김민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보자원에 대한 개념적 정의, 정보자원관리의 대상, 정보자원관리의 주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차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민호 (2008), p.244 참조.

3.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란 ICT와 非ICT의 융합 서비스 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ICT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킴으로써, 개방형 기술을 확산하게 함이 주된 목적이 있다. 결국, 이는 ‘ICT 중심의 개별적인 확산정책’에서 ‘융합에 의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의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 네트워크 융합 인프라 선진화’, ‘융합 촉진형 기술개발 및 제도개혁’ 및 ‘지식기반 신 SOC 조성’을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부분은 ‘융합 촉진형 제도 개혁’을 들 수 있다.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 서비스에 근거한 소위 ‘수직적 규제체계’의 재고(再考)에 있다. 즉 개별 인프라 또는 기기에 근거를 둔 분산규제는 현행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융합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규제방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방송과 통신영역의 ‘수평적 규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⁰⁾ 수평적 규제

를 위한 법제개선의 주요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방송법의 통신·방송의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통합에 있다.³¹⁾ 최근에는 방송통신의 진흥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³²⁾ 동 법안에서는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 파생되는 개념을 법정화함으로써 기존 방송·통신의 이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방송통신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의 체계적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³³⁾ 그러나 규제영역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역무와 방송법의 방송역무가 여전히 이원적인 - 수직적인 -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대응에 아직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며,³⁴⁾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법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촉진적 역할을 법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경기회복을 목표로 ICT 가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IC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현대화 사업, 공공시설 방진(Quakeproof)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2009년 2월 17일 미국은 브로드밴드(Broadband; 광대역통합망) 등 ICT 인프라의 구축·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경기회복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상원 (2008), ‘방송통신중장기정책방향’,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p.75이하 참조.

31)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계층규제 도입, 사업자·역무분류 체계의 일원화,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고상원 (2008), p.78 참조.

32) 동 법안은 2008. 12. 19.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과 2009. 4. 17.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2010.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U0J0H2Y2V2R0U7P1Z8X4R6V3G6R5 (검색일: 2010. 03. 05.)

33) 진흥정책의 주요내용은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이 있다.

34)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시장이 분명 융합시대로 변화된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반영이 없으면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민호 (2010), 「과학·기술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p.146.

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추진될 경기부양책은 총 7,872억 달러 규모로 ICT 부문에 약 350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게 모든 미국인이 브로드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³⁵⁾ 일본의 경우도, 총무성이 2009년 3월 'ICT New Deal을 위한 긴급제안'을 발표하면서 ICT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기 위한 집중 시책들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집중시책은 광범위한 간접효과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국가인프라 개선, R&D 및 혁신 지원,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에의 투자, 녹색기술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김태은, 2009)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와 시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ICT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부의 촉진정책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며,³⁶⁾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은 필요불가결하다. 최근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입법 움직임은 활발하다. 그 예로, 2010. 1. 13일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³⁷⁾

2009. 2. 6일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³⁸⁾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개별법률 제정을 통한 진흥정책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반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추진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³⁹⁾

'융합 인프라' 구축은 결국 '융합 서비스'를 일상화함으로써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융합 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도의 역할일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개별 서비스에 근거한 규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부의 촉진적 기능을 근거지우는 입법은 법제개선의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뢰의 정보사회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안정성을 제고하는 일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정

35) Computing (2009), 'Obama earmarks billions for technology projects', <http://www.computing.co.uk/computing/news/2236677/obama-earmarks-billions-4481375> (Retrieved on Feb. 19, 2010)

36)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녹색뉴딜사업 등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프라 투자 및 융·복합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SOC 등을 주력분야로 하는 녹색뉴딜정책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426억달러의 대규모로, 이는 2008년 GDP 대비 4.9%에 이르는 수준으로, ICT 기반 건설·운송 등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4.7조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에 의한 전체 일자리 창출의 97.6%가 녹색인프라, 녹색 건설 및 토목사업 등 SOC 분야에 집중되는데, 이는 ICT에 의한 또는 ICT를 위한 기반사업에 해당한다. 위클리공감(2009), 'IT강국 넘어 '그린IT' 선도국 되자',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6346&category_id=subject§ion_id=EDSO107003&call_from=extlink (검색일 : 2010. 01. 30).

37)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법률은 제27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②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동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는 총 781억원을 투입하여 국토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2012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 구축중인 국가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하수도, 가스, 송유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 자료 및 3차원 전자지도를 201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39) 동지; 김민호 (2010), p.80,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부가 IT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IT정책 또는 IT융합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그린IT정책과 IT융합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법률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에서 IT기반융합, 그린IT, 방송·통신융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동 법률에 제7장을 새롭게 두어 IT기반융합, 그린IT, 방송·통신융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화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방지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여타 정보화 정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신뢰의 정보사회’를 위한 법제개선은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상술하였듯이 역기능에 대한 규제는 법제도 본연의 역할이며, 또한 정보사회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종의 부작용은 종합적·체계적인 법제개선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신뢰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 (2) ‘장애인/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e-Inclusion)’, (3) ‘걱정없는 일상생활 보장’, (4) ‘선제적 재난 및 위기대응 체계 실현’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였다.⁴⁰⁾ 각 아젠다는 법제개선의 측면에서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포함 -’, ‘정보격차 해소’, ‘각종 생활안전서비스의 촉진’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은 사전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역기능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2가지 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다.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 - 즉 역기능 억제 - 을 위한 규제는 과거에는 발생한 역기능에 대하여 사후적, 특히 임시방편적으로 뒷수습 하는 형태에서 사전적 예방 또는 체계적 -시스템적(Systemic) - 대응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자율규제’ 역시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을 통한 사전예방으로의 규제형태 변이(變移)가 산출한 새로운 규제의 양상이라 볼 수 있다.⁴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적 예방체계 구축을 법제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ICT의 진화에 따라 사이버 테러, 불법정보의 유통 및 개인정보 유출은 기존의 임시방편적 상황에서 제정된 법령으로는 그 한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은 단순히 ‘사이버 세계 - online -’에 한정하지 않고 ICT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계 - on/offline - 를 포괄하고 있다. 결국 역기능 측정에 있어서 위협의 영역을 ‘정보통신망’에만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시스템⁴²⁾으로는 현행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사전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부적절한 대응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미봉적인 개별법령의 분산 적용을 탈피하고 포괄적 정보보호 법제도로의 체계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⁴³⁾

특히 정보보호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부처이기주의 -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갈등에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정원의 갈등으로 확대 - 에 따라 총체적 규제비용의 증대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⁴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문제는 동일하다. 개별 영역별 분리 입법으로 인하여 이를 통합한 단일입법의 추진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지만⁴⁵⁾ 현재도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개인정보법제시스템 완비시점 파악

40)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p.84 참조.

41) 현대의 규제정책은 행정이 규제권한을 독점하는 ‘규제독점주의’에서 규제 권한을 사회적 주체들이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로 나아가고 있다. 전재경 (2009), 「규제패러다임의 재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p.199.

42) 정보보호를 위한 양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이와 같은 맥락의 법률안은 공성진의원이 2008년 10월 28일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으로 정부 또는 민간 단독으로 차단할 수 없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공격의 사전 탐지·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08),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10S8T1G0H2K8E1L7D5H8O4U9D4W8S5 (검색일: 2010. 01. 30).

45)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부처간 갈등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민간영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 및 권한을 정보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 부처로 분산하였고, 이러한 조직 개편의 결과 정보보호 추진체계가 부처별·기능별로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부작용으로 부처 이기주의 및 총체적 규제 비용이 증대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군다나, 정부조직개편이후 개별법령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역할·기능에 대한 법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규제의 중첩·혼란, 규제 범리의 충돌 현상 등 포괄적·종합적 정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45)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 (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정립방향’, 『연세법학연구』, 12(1): 149-182, p.176 참조.

은 불가능하다.⁴⁶⁾ 요컨대, 기존의 사후적인 임시방편의 규제, 온라인을 위험영역으로 한정하여 만들어진 기존 법령에 대하여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고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시스템의 구축이 국가 정보화 전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신뢰의 정보사회’ 부문의 시급한 법제개선 방향이다.⁴⁷⁾

‘신뢰의 정보사회’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규제패러다임은 ‘자율규제’ 시스템의 확산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 역기능 규제는 ‘사후규제에서 사전규제’로 ‘사전규제’는 다시 ‘자율규제’라는 소위 ‘변종(變種)의 규제형태’를 낳게 하였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의 최소화’와 ‘민간의 책임성 강화’를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며,⁴⁸⁾ 현행 법령에서도 일부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⁴⁹⁾

자율규제의 장점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역기능을 소위 ‘직감’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위험영역을 자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위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지책 마련 및 사업자의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일거양득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기능을 국가

가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국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자율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며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에 대한 확산이 더욱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⁵⁰⁾

‘신뢰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보격차 해소’, ‘각종 생활안전서비스의 촉진’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 등이 존재한다. 제시된 영역은 정부의 촉진정책이 필요불가결한 영역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보 수요측면과 국가의 정보공급측면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진흥정책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체계적이고 누수(漏水)없는 정보격차정책이 법제화됨이 필요하다.⁵¹⁾ ‘생활안전서비스의 촉진’은 ‘각종 생활안전 서비스’에 ICT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교통안전법 등 안전법제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정보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안전관리를 ICT를 통하여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인센티브정책이 법령에 명문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하여 법제를 통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

46) 현재 국회는 3건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해훈의원 2008.8.8 발의, 변재일의원 2008.10.27 발의, 정부 2008. 11. 28. 제안) 및 9건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08-2010),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검색일 : 2010. 01. 30.)

47) 미국은 「사이버보안강화법(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내에 삽입·제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US Justice Department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2003), ‘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homeland_CSEA.htm (Retrieved on : 30. Jan. 2010)

48) 시민사회와 시장 부분이 성장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행정에서는 그 동안 규제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질서를 규율하는 자율규제가 정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호 (2009),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Ⅰ)」,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p.11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50) 최근에 자율규제는 해석학 위주의 전통적인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경제학·법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자기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규제집행비용을 절감하며 규제에 적용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정부규제에 비하여 규제강도를 완화하면서 높은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희정 (2009), 「방송통신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자료집, p.9

51) 국민의 정보향유권이 실현되는 정보생활을 완성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수요측면의 정보능력으로서 ‘정보접근능력’, ‘정보수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을 단계화하여 체계화하는 동시에 정보생활 공급측면으로서 국가의 ‘접근기반구축’, ‘지식기반구축’, ‘활용기반구축’의 3단계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오병철 (2009),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성과분석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p.94.

대비자원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수많은 재난 관련 법률이 존재함으로써 체계적 재난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유관 법률의 체계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신종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재난'에 대한 개념도 실정법률상 개념으로 흡수 시킴이 필요하다고 본다(정국환·유지연, 2009; 박영철, 2009). 결국 재난관리법률의 통합과 재난개념의 재정립을 통하여 재난관리 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제개선의 방향 측면에서 '신뢰의 정보사회' 부문은 사후규제 위주의 현행 개별법령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방식을 사전적이고 체계적 규제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효율적 국가규제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규제'에 대한 확산 검토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리된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각종 생활안전서비스의 촉진'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각각 정책과 법률의 격차를 줄이고,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정책을 법제화하며, 법체계의 재구성 및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개념화가 이뤄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일 잘하는 지식정부

이명박정부는 행정분야의 선진정보화 실현과제로 '일 잘하는 지식정부'를 제시하였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가 지칭하는 의미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하고, 이는 정보자원의 통합·

연계를 통한 창의적·지능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31). 행정분야의 정보화 패러다임은 '통합·연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기관간 장벽 및 정부내 개별행정을 추진해 오던 것'을 '기관간 소통 및 민관협업의 통합 행정'으로 발전시키고, '단절·분산의 획일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혁신하며, '제한적·형식적 정책참여'를 '포괄적·적극적 정책참여'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1) '성과를 창출하는 지능형 행정체계 확립' (2) '국민에게 편리한 생활공감 서비스 창출', (3)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민주행정 실현' 및 (4) '지속가능한 정보화 발전 기반 강화'를 '일 잘하는 지식정부' 달성을 위한 아젠다로 제시하였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106).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부문은 주로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무수한 법률의 양산을 통하여 과잉입법이 이뤄진 점이 문제된다. 즉 '일 잘하는 지식정부'의 개별 아젠다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행정부 내부의 사항으로 이는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사항의 것이다. 기존에 행정정보화 시작단계에서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추진에 관한 법률'⁵²⁾은 그 규율사항이 대부분 내부사무처리의 전자화에 대한 사항⁵³⁾으로 이는 소위 헌법 제37조 제2항⁵⁴⁾의 '법률유보'의 사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규 '법률'의 제정은 과잉입법에

52) 현재 국회는 3건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해훈의원 2008.8.8 발의, 변재일의원 2008.10.27 발의, 정부 2008. 11. 28. 제안) 및 9건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08-2010),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검색일: 2010. 01. 30.)

53) 동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제7장 보칙으로 편제되어 제정되었으며, 이 중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에 가장 많은 조문인 17개 조항을 할당함으로써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율되어도 무방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법률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화 관련 법률 특히 전자정부 관련 법률’도 그 대상으로 지목되었다.⁵⁵⁾ 2009. 12.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흡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⁵⁶⁾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으로 기존의 다수의 법률로 제정을 시도했던 법률(안)들⁵⁷⁾을 한데 통합한 것이다. 물론 꼭 법률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시책의 원칙적 표명 내지는 촉진 및 진흥의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입법의 형식으로 법률을 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보기술의 진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지금까지의 상징 또는 원칙 위주의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의 법률화는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일 잘하는 지식정부’의 궁극적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법률유보사항’으로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것이다. 과잉입법은 오히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선상에서 기존의 법률과 동일 범주에 있는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제정될 것이 아니고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실용적인 입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다수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전자정부 관련 개념, 추진체계 등의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컴팩트하게 통합한 ‘전자정부법’⁵⁸⁾은 향후 전자정부 관련 입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향후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로 정할 사항인지

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기존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규정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동반됨으로써 전자정부법 적용상 체계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이 ‘일 잘하는 지식정부’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법제적 과제라고 사료된다.

6.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첨단 ICT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非ICT 산업과의 융합·접목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기본계획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ICT 산업에 국한된 성장을 지양하고, 非ICT와의 융복합을 통한 동반성장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 ‘그린 ICT 및 협업상생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2) ‘u-ICT기반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3) ‘융합형·개방형 산업·기업 정보화’, (4) ‘선진 지식정보화를 위한 ICT산업기반 강화’를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32).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분야의 아젠다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산업의 ICT를 통한 발전책을 다루고 있다. 즉 ‘정부의 직접적·적극적 개입’보다는 후견적·소극적 지원 기능이 이뤄져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ICT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⁵⁹⁾ 즉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그린

55) 이명박정부는 규범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을 타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방동희·오강탁 (2008), p.112 참조.

5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으로 2008. 5. 29일 일기만으로 당시 폐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881 (검색일 : 2010. 01. 30.)

57) 이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1. 26 양형일의원 발의), 전자정부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2. 7. 김낙순의원 발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2006. 11. 14. 정부 제출)이 있다.

58) 전자정부법은 2010. 5. 5일 시행예정이며, 동 법률이 시행될과 동시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59) 이를 구체화한 방안으로는, u-Learning, u-Work 등 u-ICT 서비스 도입·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u-Work 도입기업 및 u-Worker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ICT에 관한 인센티브정책 근거를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린ICT산업에 관한 세제지원책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그린ICT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산업 및 서비스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기존의 규제장벽으로 인하여 ICT의 진출에 있어 장애가 되는 영역에 대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⁶⁰⁾ 이와 관련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ICT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산입함으로써 ICT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ICT서비스 법제도의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ICT의 속성에 치우쳐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국가정보화 법제개선 함의와 일반원칙

1. 함의의 도출

이상에서 검토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 방향 - 소위 ‘횡적’ 검토 결과 - 을 종적인 배열로 재배치하고자 한다. 즉, 횡축의 ‘5대분야 20개아젠다를 중심으로 도출된 법제개선방향’은 종열로 배치하면 법학적 측면에서 특성의 재분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즉,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방향의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적 고려사항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일반원칙’ - 을 도출하고자 한다.

‘창의적 소프트 파워’ 부분에서는 국가정보자원의 개발·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IR)’의 개념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보자원’의 법적개념에 대한 재확립이 선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⁶¹⁾ 즉 기존 패러다임의 바탕위에 뿌리를 두고 있어 현행 패러다임과는 부합되지 않는 ‘법적인 기본개념 - 실정법상의 정의(定意) - 의 재정립을 강조하였다.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부분에서는 서비스 및 산업의 융합에 따른 기존의 개별 산업에 근거한 수직적 규제패러다임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법제개선방향으로 언급하였다.⁶²⁾ 이 역시 기존의 기기 또는 산업분류에 따른 규제체계를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서비스 변이를 수용하여 규제패러다임의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뢰의 정보사회’ 부분에서는 임시방편적 사후규제를 탈피하고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 누수 없는 -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자율규제’의 확산을 법제개선방향으로 언급하였다.⁶³⁾ 즉 분산되고 임의적인 법체계를 통일화·균형화 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 법제시스템 구축 - 을 강조하였으며,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부분에서는 기존의 행정정보화에 있어서 법률만능주의 즉, 과잉입법을 지적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ICT의 발전속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구분을 통한 - 체계적 입법이 이뤄질 것을 법제개선방향

6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u-Health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u-Health의 허용범위 및 원격의료의 비용부담주체, 행위별 수가문제 등이 기존의 규제장벽과 첨예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u-Healthcare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p.4 참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U-서비스 추진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p.105 이하 참조.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보수적 성격을 지닌 의료건강 관련 법률과 신속·편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ICT가 융합하게 될 경우 대치되는 두 가지 간에 적절한 균형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61) II. 2. 창의적 소프트 파워 참조.

62) II. 3.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참조.

63) II. 4. 신뢰의 정보사회 참조.

으로 지적하였다.⁶⁴⁾ 이 역시 입법에 있어서 체계적 정치성(精緻性)이 필요함을 강조한 사항이다. 끝으로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부분에서는 ICT속성과 사회문화제도적 특성을 공히 균형있게 반영하는 법제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⁶⁵⁾ 즉 ICT와 사회문화 및 기본권의 속성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결국, 상기 5대부분에서 도출한 법제개선의 방향을 종합·분류해 보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개선의 일반적 고려사항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일반원칙’ - 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기존의 구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미래 정보화법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법적 개념’에 대한 재정비, 두 번째, 기존의 임시방편적 규제 등에서 발생한 입법남용 및 비체계적 입법시스템에 대한 법체계 개편, 끝으로 세 번째, 기술과 사회문화의 특성을 공히 반영할 수 있는 규제패러다임의 수용 내지 전환이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는 정보화 도입 초기의 환경에 기반하여 생성된 개념, 법체계, 규제패러다임에 대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을 포괄하고 동시대의 사회문화 및 건전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정의, 재정립, 재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이제까지 각 분야의 개별적 개념과 개별적 진흥·규제정책이 법제화 되는 등 분야별로 법제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생성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온 정보화 법제에 대하여, 현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미래의 기술을 포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약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⁶⁾

즉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법제개선은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작을 위한 정보화 법제시스템 전반의 환골탈태(換骨甦胎)를 의미한다.

2. 기본개념의 재정립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법제 개선방향의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첫 번째 ‘개념의 재정립 또는 재정비’를 지적하였다. 개념의 정립은 규제의 영역과 대상을 확정한다. 또한 개념은 규제의 철학을 반영하기도 한다. 실정법상 개념의 모호성은 법률 전체의 불확정성, 더 나아가 법률시스템의 비체계성,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개념’의 역할은 정보화의 지향점, 정보화의 대상 내지 영역, 정보화의 주체 등 정보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된다. 즉 정보화 법제 영역에서 동시대의 기술 및 문화환경, 더 나아가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 - 내지는 포괄 - 하지 못할 경우 그 개념은 오히려 발전을 퇴행케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소위 ‘신속하게’ 정보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정보화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⁶⁷⁾ 기존의 개념을 다른 용례로 사용하거나, 현재 법률상 존재하는 개념을 차치(且置)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등 개념간 유기적 관련성 및 정합성을 도모하지 못하였다.⁶⁸⁾ 결국, 정보화와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해 법률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놓고 다수의 법률 및 법률상 정의된 개념들을 비교하며 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에

64) II. 5. 일 잘하는 지식정부 참조.

65) II. 6.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참조.

66) 정보화촉진분야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법, 전자정부분야에서의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분야에서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적 비체계적 생성이 이명박정부 이전의 정보화 법제 양상이었다면, 이명박정부 이후의 양상은 정보화촉진분야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분야에서 전자정부법, 정보보호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 통합·체계화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방동희·오강탁(2008), p.112 참조.

67) 2010년 1월 30일 현재, 현행법령상 ‘정보화’라는 용어가 있는 법률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총 95개에 달한다.

68) 이러한 예는 비일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와 건축법 등 일부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전산화’, 본글의 II. 2. 창의적 소프트웨어 파워 부분에서 지적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7호상 ‘지식정보자원’,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자원’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제2항제4호상 ‘정보자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와 전자서명법상 ‘개인정보’ 등이 그러하다.

까지 와 있다. 개념의 존재의의는 규제방향 및 규제 대상의 명확성·명료성·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기여함이다. 즉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현행 법률상 '개념'의 통일적·체계적 정비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수 사항임에 틀림없다.

또한 '개념'의 발생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개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내지는 지향'에 있다. 즉 개념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지만 해당의 법적 개념이 사용되는 취지 내지 지향이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실정법상 개념은 '존재'가 아니라 '당위'인 것이다. 결국, 제도의 취지 내지 지향점이 진화에 따라 '개념'의 정의도 그에 부합되게 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은 규율 대상과 영역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며, 규율대상과 영역은 제도의 취지 내지 지향점이 진화되면 이에 수반하여 변화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지향점은 새로운 ICT의 도입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1995년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에 대한 정의⁶⁹⁾는 2009년도에 전부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상의 '정보화'에 대한 정의⁷⁰⁾와 동일하다. ICT와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금 14년전에 제정된 법률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법률과 현재의 간극이 극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근간으로 구성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역할이 과연 현재의 - 또는 미래의 -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개념구성에 있어서는 제도가 지향하는 '원리적 구심점'이 담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ICT의 진화속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 치우쳐 다소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속도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민첩한 대응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 정보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체계화시켜야할 이 시점 - 에서는 '개념'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정보화 법제개선에 있어서 '개념'의 체계적 정비는 향후에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분산된 유사 개념의 체계적 정리가 입법추진과정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개념구성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 및 지향을 반영하고, 명확·명료·간결성을 확보함이 필요하다.

'개념 재정립'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문제되는 개념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술한 '정보화'의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의 개념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효율성 내지 효용성'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기술적 기여'를 중심으로 개념이 구성되어 있다. 즉 1995년의 사회발전을 위한 '기술촉진적' 이념이 다분히 녹아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의 발생, 사회 안전의 보장 등 '정보화'의 이념적 구심점에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기술'과 '사회발전'에 치우친 '정보화'의 개념에 '기본권'과 '보편성'의 이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정보화'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라는 요소와 '보편적으로'라는 일반적 보장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정보화로 인해 만연된 현재의 정보화 역기능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맹목적 사회 효

69)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 1996. 1. 1] [법률 제4969호, 1995. 8. 4. 제정] 제2조(정의) 제2호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0)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 제3조(정의) 제2호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신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정보화의 개념으로 재설정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화’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정보자원’의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보자원’의 개념은 미국 정보기술관리혁신법(ITMRA: The Clinger-Cohen Act of 1996)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자원관리’에 있어 처음부터 ‘정보자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기보다 개별 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 - 에 의해서 분화된 개별적 관리행위(Management)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정보자원관리’를 도모해 왔다. 이러한 각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이 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자원’,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자원’, 구 지식정보자원관리법상 ‘지식정보자원’이다. 결국 이는 개별적으로 분화된 정보화 체계내에서 수단적 차원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개념의 산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자원관리(IRM)’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기 분화된 개별 개념을 ‘정보자원’으로 재정립함이 필요하다. 결국 정보자원관리(IRM)의 원 취지⁷¹⁾에 부합하는 ‘정보자원’의 개념은 ‘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인력’으로 정의하고, 국가정보화의 기본법률에 해당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동 개념을 명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셋째로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⁷²⁾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⁷³⁾로 정의 되며, 「전자서명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⁷⁴⁾로 정의함으로써 상기 3개의 법률 모두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개념의 차이는 규제의 차등을 초래하고 이는 법적인정성의 침해로 연결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향후 입법되게 될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두고 타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타 법률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통일성,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⁷⁵⁾

71)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과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의 개념은 미국 정보기술관리혁신법(ITMRA: The Clinger-Cohen Act of 1996)에 의거한 개념으로 동 법은 정보자원을 정보,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 장치, 예산, 정보기술로 정의하며, 정보자원관리는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각 규정.

44 U.S.C. 3502(6): the term ‘information resources’ means information and related resources, such as personnel, equipment, fun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44 U.S.C. 3502(7): the term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means the process of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to accomplish agency missions and to improve agency performance, including through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burdens on the public.

72)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73)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74)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7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민호(2010), p.109 참조.

3. 법률간 체계정합성 고도화

법률 문언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법률체계의 비정합성·비체계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신생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또는 신종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⁷⁶⁾ 또한, 행정분야의 정보화에 있어서는, 행정부 내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법률의 형식을 빌었다. 행정부 내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듯이 법률유보의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지 않는 사항은 아니다.⁷⁷⁾ 즉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을 이용하면 된다. 게다가, ICT를 활용한 행정업무 환경은 오히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융통성 및 효율성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변화가 필요한 영역인데도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도리어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소위 ‘현상’에만 치우친 입법으로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 비체계적 입법 과잉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입법의 남용은 이명박정부의 법률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일부 해소되었다.⁷⁸⁾ 향후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로 정할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기존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규정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동반됨으로써 전자정부법 적용상 체계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이 ‘일 잘하는 지식정부’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법제적 과제라고 사료된다.

정보화 법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⁷⁹⁾ 서로 체계적 연관성을 가지며 작동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입법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향후 국가정보화 법제 개선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이 문제된다. ICT 발전의 속도라는 상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만약 신규 입법의 필요가 있다면 현행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체계적 정합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입법 개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체계정합성에 관한 문제를 현행 정보보안의 법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정보보안 법제 분야는 관련 법규가 산재해 있다. 정보보안 침해의 예방에 대한 규정과 사후조치에 대한 각종 규정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목적규정의 혼재, 규율대상의 중복, 정부기관 또는 위원회의 권한중복의 문제가 상존하며, 일선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규 적용상 혼선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술하였듯이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개별적 입법화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체계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의 통합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김민호, 2010: 101~102). 통합법제의 마련과 더불어 법률간

76) 전자의 대표적 예가, 위치정보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5. 7.28][법률 제7372호, 2005. 1.27, 제정]과, IPTV의 등장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 2008. 4.18][법률 제8849호, 2008. 1.17, 제정] 등이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 예로는 정보접근의 불평등이라는 역기능 발생에 따른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 2001. 4.17][법률 제6356호, 2001. 1.16, 제정] 이 있다. 후자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최근 2009. 8.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 2009. 8.23][법률 제9705호, 2009. 5.22, 전부개정]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77) 참여정부 행정분야의 정보화 관련 입법과잉은 구 정보통신부와의 정보화 관련 입법경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준비된 법안은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2. 7. 김낙순의원 발의),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1. 26. 양형일의원 발의) 등이 있다.

78)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 간소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전자정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준비과정 및 전체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2008), p.157 참조.

79) 정보화 법제도는 정보화기반(정책추진, 인프라구축, 접근향상), 정보화서비스(공공행정, 민간거래), 정보화산업, 지식재산권, 역기능방지(정보보호, 이용자보호)의 5가지 분야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로 체계적 연관성을 띄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 (2007), p.173 이하 참조.

체계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과제로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의 입법형식의 개선도 요망된다.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은 정보보안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있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률로 격상됨이 필요하다고 본다(김민호, 2010: 101~102). 또한 정보보안의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요정보통신의 기반보호는 행정안전부가, 그 외의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이 민간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안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되기 어렵다. ‘추진체계’의 일관된 정합성을 통한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시급히 요망된다.

4. 규제패러다임 예측과 반영

정보화법제 개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사항으로 기본개념의 문제, 법률체계정합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이는 과거의 과오입법 내지 향후 입법 추진 시 과거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입법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초점을 두는 일반원칙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화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반원칙적 사항은 ‘규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제에 반영하는 일이다.⁸⁰⁾

종적으로 산업과 기술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횡적으로 서비스간 연계가 일어나고 있다. 즉, 기존의

산업·기기 위주의 규제는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산업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동일한 서비스의 규제대상과 영역이 교차·중복·혼동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가 현재 ICT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철학으로 ICT서비스 분야의 관련 입법 추진시 고려되고 있다.⁸¹⁾ 또한 ‘신뢰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에 있어서,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사후규제는 국가의 규제 목적 - 즉, 처벌을 통한 예방 - 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보화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적 시스템규제의 필요성과 그 연장선상에서 ‘자율규제’가 현행의 규제패러다임을 점하고 있다.⁸²⁾

규제패러다임은 법적개념과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포괄하는 상위의 가치적 요소에 해당한다. 즉 규제패러다임에 따라 법률상 개념의 재정비와 관련 법률간의 체계정합성이 뒤따른다. 정보화법제 개선에 있어서 ICT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규제패러다임’의 예측과 반영은 정보화 관련 입법을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이다.⁸³⁾

IV. 결어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⁸⁴⁾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

80) 오늘날 나타나는 과학기술영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빠른 발전 속도’이다 현재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 실용화까지의 시차를 급격히 단축시키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데 비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그 발전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과학기술영역에서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규제지체 현상’ 또는 ‘법과 정책의 부정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민호(2010), p.15.

81) 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논문은 홍대식 (2009), ‘방송통신통합법의 과제와 전망’, 『IT와 법연구』, 3: 127-160; 김동욱 (2008),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혁의 방향’, 『경제규제와 법』, 1(2): 5-15; 이원우 (2008),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106: 405-422.

82)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인터넷기반서비스 내용규제 제도개선 방안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p.39면 이하; 황승홍 (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261-288 참조.

83) 김민호 교수는 과학기술관련법제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책과 그에 대한 사회의 수용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과학기술법제의 특징에 적합한 규제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민호(2010), p.70.

8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1987. 1. 1] [법률 제3848호, 1986. 5.12. 제정]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립·시행되게 되었다.⁸⁵⁾ 2009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탄생하고 이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이 선포되었다. 법률로 본다면 ‘정보화의 3기’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정보화 3기’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정보화법제 개선’의 함의와 원칙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소위 ‘제2기’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대 - 때의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활약상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대했다. 정부의 정보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근거를 제공했으며, 역기능에 대한 민첩한 대응능력을 보였다. 이제는 제2기의 정보화 법제의 성과와 그에 따르는 이면의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제3기의 닦을 올려야 할 시기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소재로 하여 법제개선방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향후 정보화법제 개선에 있어서 함의와 일반원칙적인 고려사항을 살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지적한 함의의 일반원칙이 정보화 법제 개선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제2기에서 나타난 이면적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인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상원 (2008). “방송통신중장기정책방향.”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09). “국가정보화기본계획.” <http://www.pcndis.go.kr>. (검색일 : 2010. 02. 21).
- 김동욱 (2008).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경제규제와 법」, 1(2): 5-15.
- 김민호 (2008). “전자정부에서 지식관리(KM) 및 정보자원관리(IRM)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0: 225-245.
- 김민호 (2010). 「과학·기술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김성근·안남규·이진실 (2005).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체계 분석 : 미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7(1): 21-40.
- 김태은 (2009).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의 ICT전략”, 「방송통신정책」, 21(5): 59-63.
- 박영철 (2009). 「재난관리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방동희 (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정립 방향”, 「연세법학연구」, 12(1): 149-182.
- 방동희 (2007).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2(2): 173-197.
- 방동희·오강탁 (2008).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42 : 107-139.
- 신영진 (2006).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 「자치행정」, 2006(11): 90-95.
- 오병철 (2009).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성과분석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오정연 (2009).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 위클리공감 (2009). “IT강국 넘어 ‘그린IT’ 선도국 되자.”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6346&category_id=subject§ion_id=EDS0107003&call_from=extlink. (검색일 : 2010. 01. 30).
- 이원우 (2008).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106: 405-422.
- 이희정 (2009). “방송통신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위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자료집.
- 전재경 (2009). 「규제패러다임의 재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정국환·유지연 (2009). “디지털재난 그 의미와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KISIDI 이슈리포트」, 9(9): 1-45.
-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청와대 (2008). “대통령 취임사(2008. 2. 25).” <http://>

85)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 1996. 1. 1] [법률 제4969호, 1995. 8. 4. 제정]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6. (검색일 : 2010. 01. 21).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u-Healthcare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a). 「U-서비스 추진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b). 「정보화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2009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인터넷기반서비스 내용규제 제도개선 방안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대호 (2009).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I)」.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홍대식 (2009). “방송통신통합법의 과제와 전망.” 「IT와 법연구」, 3: 127-160.
- 황승흠 (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261-288.
- Computing (2009). “Obama earmarks billions for technology projects.” <http://www.computing.co.uk/computing/news/2236677/obama-earmarks-billions-4481375>. (Retrieved on Feb. 19, 2010).
- US Justice Department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2003). “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homeland_CSEA.htm. (Retrieved on Jan. 30, 2010).